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건본주택 운영 안내사항
 -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본주택 관람 시 입장 인원 및 운영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코로나의 정부방역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hillstate.co.kr/s/twj)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청약 및 사전서류접수, 계약체결 등 주요 행사 일정에는 일반 고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건본주택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우려에 따른 조치로 불시에 건본주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건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예정입니다.
-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분양상담 전화(1522-1157),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나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한 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2.08.입니다.(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파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입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인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한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 '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첨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점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08.)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지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22.12.08.)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23.06.08.)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파주시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2.12.08.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 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안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시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우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월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	○	○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자촉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시행)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내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 및 제8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hillstate.co.kr/s/twj)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

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조정대상지역 파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관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바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속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기간내 소유권이전등기시 해제)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파주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되며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에 의거 처벌(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됩니다.(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전매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와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태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 1순위, 2순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3.12.18.(월)	2023.12.19.(화)	2023.12.20.(수)	2023.12.27.(수)	2024.01.08.(월) ~ 2024.01.10.(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 건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건본주택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1) * 방문예약 방식 및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65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동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 분양권 매수자는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을 이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주택과 - 제49401호(2023.12.0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71-2번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49층 3개동 총 744세대

[특별공급 441세대(일반[기관추천] 73세대, 다자녀가구 74세대, 신혼부부 132세대, 노부모부양 22세대, 생애최초 14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타입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공급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656	01	084.9888A	84A	84.9888	35.7281	120.7169	68.3052	189.0221	55.9004	244	23	24	43	7	46	143	101	6
		02	084.9827B	84B	84.9827	37.0222	122.0049	68.3005	190.3054	55.8962	244	23	24	43	7	46	143	101	6
		03	084.9639C	84C	84.9639	37.0708	122.0347	68.2852	190.3199	55.8839	250	27	25	46	7	48	153	97	6
		04	164.5903P	164P	164.5903	69.3799	233.9702	132.2807	366.2509	108.2591	6	0	1	0	1	0	2	4	0
						합계					744	73	74	132	22	140	441	303	18

※ 면적 환산방법(공급면적→평)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내진설계 등급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204g입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공급 세대 수	동별 라인별	층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5%)	계약 후 30일 이내 (5%)	1차(15%)	2차(15%)	3차(15%)	4차(15%)	입주지정일	
											2024.05.10.	2024.08.12.	2024.12.10.	2025.04.10		
084-9888A	244	101동 3호	3층	1	391,814,640	301,785,360		693,600,000	34,680,000	34,680,000	104,040,000	104,040,000	104,040,000	104,040,000	208,080,000	
			4층	1	400,288,140	308,311,860		708,600,000	35,430,000	35,430,000	106,290,000	106,290,000	106,290,000	106,290,000	212,580,000	
			5층	1	408,761,640	314,838,360		723,600,000	36,180,000	36,180,000	108,540,000	108,540,000	108,540,000	108,540,000	217,080,000	
			6층-10층	5	410,851,770	316,448,230		727,300,000	36,365,000	36,365,000	109,095,000	109,095,000	109,095,000	109,095,000	218,190,000	
			11층-15층	5	415,088,520	319,711,480		734,800,000	36,740,000	36,740,000	110,220,000	110,220,000	110,220,000	110,220,000	220,440,000	
			16층-20층	5	430,001,880	331,198,120		761,200,000	38,060,000	38,060,000	114,180,000	114,180,000	114,180,000	114,180,000	228,360,000	
			21층-25층	4	432,148,500	332,851,500		765,000,000	38,250,000	38,250,000	114,750,000	114,750,000	114,750,000	114,750,000	229,500,000	
			26층-30층	5	434,351,610	334,548,390		768,900,000	38,445,000	38,445,000	115,335,000	115,335,000	115,335,000	115,335,000	230,670,000	
		31층-35층	5	436,498,230	336,201,770		772,700,000	38,635,000	38,635,000	115,905,000	115,905,000	115,905,000	115,905,000	231,810,000		
		36층-40층	5	438,701,340	337,898,660		776,600,000	38,830,000	38,830,000	116,490,000	116,490,000	116,490,000	116,490,000	232,980,000		
		101동 4호	3층	1	387,860,340	298,739,660		686,600,000	34,330,000	34,330,000	102,990,000	102,990,000	102,990,000	102,990,000	205,980,000	
			4층	1	396,277,350	305,222,650		701,500,000	35,075,000	35,075,000	105,225,000	105,225,000	105,225,000	105,225,000	210,450,000	
			5층	1	404,637,870	311,662,130		716,300,000	35,815,000	35,815,000	107,445,000	107,445,000	107,445,000	107,445,000	214,890,000	
			6층-10층	5	406,728,000	313,272,000		720,000,000	36,000,000	36,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216,000,000	
			11층-15층	5	410,964,750	316,535,250		727,500,000	36,375,000	36,375,000	109,125,000	109,125,000	109,125,000	109,125,000	218,250,000	
			16층-18층	3	421,471,890	324,628,110		746,100,000	37,305,000	37,305,000	111,915,000	111,915,000	111,915,000	111,915,000	223,830,000	
			19층-20층	2	425,708,640	327,891,360		753,600,000	37,680,000	37,680,000	113,040,000	113,040,000	113,040,000	113,040,000	226,080,000	
			21층-25층	4	427,855,260	329,544,740		757,400,000	37,870,000	37,870,000	113,610,000	113,610,000	113,610,000	113,610,000	227,220,000	
		26층-30층	5	430,058,370	331,241,630		761,300,000	38,065,000	38,065,000	114,195,000	114,195,000	114,195,000	114,195,000	228,390,000		
		31층-35층	5	432,204,990	332,895,010		765,100,000	38,255,000	38,255,000	114,765,000	114,765,000	114,765,000	114,765,000	229,530,000		
		36층-40층	5	434,351,610	334,548,390		768,900,000	38,445,000	38,445,000	115,335,000	115,335,000	115,335,000	115,335,000	230,670,000		
		102동 3호	3층	1	403,734,030	310,965,970		714,700,000	35,735,000	35,735,000	107,205,000	107,205,000	107,205,000	107,205,000	214,410,000	
			4층	1	412,433,490	317,666,510		730,100,000	36,505,000	36,505,000	109,515,000	109,515,000	109,515,000	109,515,000	219,030,000	
			5층	1	421,189,440	324,410,560		745,600,000	37,280,000	37,280,000	111,840,000	111,840,000	111,840,000	111,840,000	223,680,000	
			6층-10층	5	423,336,060	326,063,940		749,400,000	37,470,000	37,470,000	112,410,000	112,410,000	112,410,000	112,410,000	224,820,000	
			11층-15층	5	427,685,790	329,414,210		757,100,000	37,855,000	37,855,000	113,565,000	113,565,000	113,565,000	113,565,000	227,130,000	
			16층-20층	5	429,888,900	331,111,100		761,000,000	38,050,000	38,050,000	114,150,000	114,150,000	114,150,000	114,150,000	228,300,000	
			21층-25층	4	432,092,010	332,807,990		764,900,000	38,245,000	38,245,000	114,735,000	114,735,000	114,735,000	114,735,000	229,470,000	
			26층-30층	5	438,644,850	337,855,150		776,500,000	38,825,000	38,825,000	116,475,000	116,475,000	116,475,000	116,475,000	232,950,000	
		31층-35층	5	440,847,960	339,552,040		780,400,000	39,020,000	39,020,000	117,060,000	117,060,000	117,060,000	117,060,000	234,120,000		
		36층-40층	5	443,051,070	341,248,930		784,300,000	39,215,000	39,215,000	117,645,000	117,645,000	117,645,000	117,645,000	235,290,000		
		41층 이상	3	451,863,510	348,036,490		799,900,000	39,995,000	39,995,000	119,985,000	119,985,000	119,985,000	119,985,000	239,970,000		
		102동 4호	3층	1	387,860,340	298,739,660		686,600,000	34,330,000	34,330,000	102,990,000	102,990,000	102,990,000	102,990,000	205,980,000	
			4층	1	396,277,350	305,222,650		701,500,000	35,075,000	35,075,000	105,225,000	105,225,000	105,225,000	105,225,000	210,450,000	
			5층	1	404,637,870	311,662,130		716,300,000	35,815,000	35,815,000	107,445,000	107,445,000	107,445,000	107,445,000	214,890,000	
			6층-10층	5	406,728,000	313,272,000		720,000,000	36,000,000	36,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216,000,000	
			11층-15층	5	410,964,750	316,535,250		727,500,000	36,375,000	36,375,000	109,125,000	109,125,000	109,125,000	109,125,000	218,250,000	
			16층-20층	5	425,652,150	327,847,850		753,500,000	37,675,000	37,675,000	113,025,000	113,025,000	113,025,000	113,025,000	226,050,000	
			21층-25층	4	427,855,260	329,544,740		757,400,000	37,870,000	37,870,000	113,610,000	113,610,000	113,610,000	113,610,000	227,220,000	
			26층-30층	5	430,001,880	331,198,120		761,200,000	38,060,000	38,060,000	114,180,000	114,180,000	114,180,000	114,180,000	228,360,000	
		31층-35층	5	436,498,230	336,201,770		772,700,000	38,635,000	38,635,000	115,905,000	115,905,000	115,905,000	115,905,000	231,810,000		
		36층-40층	5	438,701,340	337,898,660		776,600,000	38,830,000	38,830,000	116,490,000	116,490,000	116,490,000	116,490,000	232,980,000		
		41층 이상	3	447,457,290	344,642,710		792,100,000	39,605,000	39,605,000	118,815,000	118,815,000	118,815,000	118,815,000	237,630,000		
		103동 3호		3층	1	407,801,310	314,098,690		721,900,000	36,095,000	36,095,000	108,285,000	108,285,000	108,285,000	108,285,000	216,570,000

064.9827B	244	4층	1	416,613,750	320,886,250	737,500,000	36,875,000	36,875,000	110,625,000	110,625,000	110,625,000	110,625,000	221,250,000
		5층	1	425,426,190	327,673,810	753,100,000	37,655,000	37,655,000	112,965,000	112,965,000	112,965,000	112,965,000	225,900,000
		6층-10층	5	427,629,300	329,370,700	757,000,000	37,850,000	37,850,000	113,550,000	113,550,000	113,550,000	113,550,000	227,100,000
		11층-15층	5	432,035,520	332,764,480	764,800,000	38,240,000	38,240,000	114,720,000	114,720,000	114,720,000	114,720,000	229,440,000
		16층-20층	5	434,238,630	334,461,370	768,700,000	38,435,000	38,435,000	115,305,000	115,305,000	115,305,000	115,305,000	230,610,000
		21층-25층	5	436,441,740	336,158,260	772,600,000	38,630,000	38,630,000	115,890,000	115,890,000	115,890,000	115,890,000	231,780,000
		26층-30층	4	438,644,850	337,855,150	776,500,000	38,825,000	38,825,000	116,475,000	116,475,000	116,475,000	116,475,000	232,950,000
		31층-35층	5	440,847,960	339,552,040	780,400,000	39,020,000	39,020,000	117,060,000	117,060,000	117,060,000	117,060,000	234,120,000
		36층-40층	5	443,051,070	341,248,930	784,300,000	39,215,000	39,215,000	117,645,000	117,645,000	117,645,000	117,645,000	235,290,000
		41층 이상	8	451,863,510	348,036,490	799,900,000	39,995,000	39,995,000	119,985,000	119,985,000	119,985,000	119,985,000	239,970,000
		3층	1	403,790,520	311,009,480	714,800,000	35,740,000	35,740,000	107,220,000	107,220,000	107,220,000	107,220,000	214,440,000
		4층	1	412,546,470	317,753,530	730,300,000	36,515,000	36,515,000	109,545,000	109,545,000	109,545,000	109,545,000	219,090,000
		5층	1	421,245,930	324,454,070	745,700,000	37,285,000	37,285,000	111,855,000	111,855,000	111,855,000	111,855,000	223,710,000
	6층-10층	5	423,449,040	326,150,960	749,600,000	37,480,000	37,480,000	112,440,000	112,440,000	112,440,000	112,440,000	224,880,000	
	11층-15층	5	427,798,770	329,501,230	757,300,000	37,865,000	37,865,000	113,595,000	113,595,000	113,595,000	113,595,000	227,190,000	
	16층-20층	5	430,001,880	331,198,120	761,200,000	38,060,000	38,060,000	114,180,000	114,180,000	114,180,000	114,180,000	228,360,000	
	21층-25층	5	432,148,500	332,851,500	765,000,000	38,250,000	38,250,000	114,750,000	114,750,000	114,750,000	114,750,000	229,500,000	
	26층-30층	4	434,351,610	334,548,390	768,900,000	38,445,000	38,445,000	115,335,000	115,335,000	115,335,000	115,335,000	230,670,000	
	31층-35층	5	436,498,230	336,201,770	772,700,000	38,635,000	38,635,000	115,905,000	115,905,000	115,905,000	115,905,000	231,810,000	
	36층-40층	5	438,701,340	337,898,660	776,600,000	38,830,000	38,830,000	116,490,000	116,490,000	116,490,000	116,490,000	232,980,000	
	41층 이상	8	447,457,290	344,642,710	792,100,000	39,605,000	39,605,000	118,815,000	118,815,000	118,815,000	118,815,000	237,630,000	
	3층	1	392,040,600	301,959,400	694,000,000	34,700,000	34,700,000	104,100,000	104,100,000	104,100,000	104,100,000	208,200,000	
	4층	1	400,514,100	308,485,900	709,000,000	35,450,000	35,450,000	106,350,000	106,350,000	106,350,000	106,350,000	212,700,000	
	5층	1	408,987,600	315,012,400	724,000,000	36,200,000	36,200,000	108,600,000	108,600,000	108,600,000	108,600,000	217,200,000	
	6층-10층	5	411,077,730	316,622,270	727,700,000	36,385,000	36,385,000	109,155,000	109,155,000	109,155,000	109,155,000	218,310,000	
	11층-15층	5	415,314,480	319,885,520	735,200,000	36,760,000	36,760,000	110,280,000	110,280,000	110,280,000	110,280,000	220,560,000	
	16층-17층	2	425,087,250	327,412,750	752,500,000	37,625,000	37,625,000	112,875,000	112,875,000	112,875,000	112,875,000	225,750,000	
	18층-20층	3	429,380,490	330,719,510	760,100,000	38,005,000	38,005,000	114,015,000	114,015,000	114,015,000	114,015,000	228,030,000	
	21층-25층	4	431,583,600	332,416,400	764,000,000	38,200,000	38,200,000	114,600,000	114,600,000	114,600,000	114,600,000	229,200,000	
	26층-30층	5	433,786,710	334,113,290	767,900,000	38,395,000	38,395,000	115,185,000	115,185,000	115,185,000	115,185,000	230,370,000	
	31층-35층	5	435,933,330	335,766,670	771,700,000	38,585,000	38,585,000	115,755,000	115,755,000	115,755,000	115,755,000	231,510,000	
	36층-40층	5	438,136,440	337,463,560	775,600,000	38,780,000	38,780,000	116,340,000	116,340,000	116,340,000	116,340,000	232,680,000	
	3층	1	404,016,480	311,183,520	715,200,000	35,760,000	35,760,000	107,280,000	107,280,000	107,280,000	107,280,000	214,560,000	
	4층	1	412,772,430	317,927,570	730,700,000	36,535,000	36,535,000	109,605,000	109,605,000	109,605,000	109,605,000	219,210,000	
	5층	1	421,471,890	324,628,110	746,100,000	37,305,000	37,305,000	111,915,000	111,915,000	111,915,000	111,915,000	223,830,000	
	6층-10층	5	423,675,000	326,325,000	750,000,000	37,500,000	37,500,000	112,500,000	112,500,000	112,500,000	112,500,000	225,000,000	
	11층-15층	5	428,024,730	329,675,270	757,700,000	37,885,000	37,885,000	113,655,000	113,655,000	113,655,000	113,655,000	227,310,000	
	16층-20층	5	434,577,570	334,722,430	769,300,000	38,465,000	38,465,000	115,395,000	115,395,000	115,395,000	115,395,000	230,790,000	
	21층-25층	4	436,780,680	336,419,320	773,200,000	38,660,000	38,660,000	115,980,000	115,980,000	115,980,000	115,980,000	231,960,000	
	26층-30층	5	438,983,790	338,116,210	777,100,000	38,855,000	38,855,000	116,565,000	116,565,000	116,565,000	116,565,000	233,130,000	
	31층-35층	5	441,186,900	339,813,100	781,000,000	39,050,000	39,050,000	117,150,000	117,150,000	117,150,000	117,150,000	234,300,000	
36층-40층	5	443,390,010	341,509,990	784,900,000	39,245,000	39,245,000	117,735,000	117,735,000	117,735,000	117,735,000	235,470,000		
3층	1	399,214,830	307,485,170	706,700,000	35,335,000	35,335,000	106,005,000	106,005,000	106,005,000	106,005,000	212,010,000		
4층	1	407,857,800	314,142,200	722,000,000	36,100,000	36,1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216,600,000		
5층	1	416,500,770	320,799,230	737,300,000	36,865,000	36,865,000	110,595,000	110,595,000	110,595,000	110,595,000	221,190,000		
6층-10층	5	418,647,390	322,452,610	741,100,000	37,055,000	37,055,000	111,165,000	111,165,000	111,165,000	111,165,000	222,330,000		
11층-15층	5	422,940,630	325,759,370	748,700,000	37,435,000	37,435,000	112,305,000	112,305,000	112,305,000	112,305,000	224,610,000		
16층-20층	5	425,087,250	327,412,750	752,500,000	37,625,000	37,625,000	112,875,000	112,875,000	112,875,000	112,875,000	225,750,000		
21층-25층	4	431,583,600	332,416,400	764,000,000	38,200,000	38,200,000	114,600,000	114,600,000	114,600,000	114,600,000	229,200,000		
26층-30층	5	433,786,710	334,113,290	767,900,000	38,395,000	38,395,000	115,185,000	115,185,000	115,185,000	115,185,000	230,370,000		
31층-35층	5	435,933,330	335,766,670	771,700,000	38,585,000	38,585,000	115,755,000	115,755,000	115,755,000	115,755,000	231,510,000		
36층-40층	5	438,136,440	337,463,560	775,600,000	38,780,000	38,780,000	116,340,000	116,340,000	116,340,000	116,340,000	232,680,000		
41층 이상	3	446,835,900	344,164,100	791,000,000	39,550,000	39,550,000	118,650,000	118,650,000	118,650,000	118,650,000	237,300,000		
3층	1	392,040,600	301,959,400	694,000,000	34,700,000	34,700,000	104,100,000	104,100,000	104,100,000	104,100,000	208,200,000		
4층	1	400,514,100	308,485,900	709,000,000	35,450,000	35,450,000	106,350,000	106,350,000	106,350,000	106,350,000	212,700,000		
5층	1	408,987,600	315,012,400	724,000,000	36,200,000	36,200,000	108,600,000	108,600,000	108,600,000	108,600,000	217,200,000		
6층-10층	5	411,077,730	316,622,270	727,700,000	36,385,000	36,385,000	109,155,000	109,155,000	109,155,000	109,155,000	218,310,000		
11층-15층	5	415,314,480	319,885,520	735,200,000	36,760,000	36,760,000	110,280,000	110,280,000	110,280,000	110,280,000	220,560,000		
16층-20층	5	425,087,250	327,412,750	752,500,000	37,625,000	37,625,000	112,875,000	112,875,000	112,875,000	112,875,000	225,750,000		
21층-25층	4	427,290,360	329,109,640	756,400,000	37,820,000	37,820,000	113,460,000	113,460,000	113,460,000	113,460,000	226,920,000		
26층-30층	5	433,786,710	334,113,290	767,900,000	38,395,000	38,395,000	115,185,000	115,185,000	115,185,000	115,185,000	230,370,000		

084.9639C	250	103동 2호	31층~35층	5	435,933,330	335,766,670	771,700,000	38,585,000	38,585,000	115,755,000	115,755,000	115,755,000	115,755,000	231,510,000	
			36층~40층	5	438,136,440	337,463,560	775,600,000	38,780,000	38,780,000	116,340,000	116,340,000	116,340,000	116,340,000	116,340,000	232,680,000
			41층 이상	3	446,835,900	344,164,100	791,000,000	39,550,000	39,550,000	118,650,000	118,650,000	118,650,000	118,650,000	118,650,000	237,300,000
		103동 2호	3층	1	408,027,270	314,272,730	722,300,000	36,115,000	36,115,000	108,345,000	108,345,000	108,345,000	108,345,000	108,345,000	216,690,000
			4층	1	416,839,710	321,060,290	737,900,000	36,895,000	36,895,000	110,685,000	110,685,000	110,685,000	110,685,000	110,685,000	221,370,000
			5층	1	425,652,150	327,847,850	753,500,000	37,675,000	37,675,000	113,025,000	113,025,000	113,025,000	113,025,000	113,025,000	226,050,000
			6층~10층	5	427,855,260	329,544,740	757,400,000	37,870,000	37,870,000	113,610,000	113,610,000	113,610,000	113,610,000	113,610,000	227,220,000
			11층~15층	5	432,261,480	332,938,520	765,200,000	38,260,000	38,260,000	114,780,000	114,780,000	114,780,000	114,780,000	114,780,000	229,560,000
			16층~20층	5	434,464,590	334,635,410	769,100,000	38,455,000	38,455,000	115,365,000	115,365,000	115,365,000	115,365,000	115,365,000	230,730,000
			21층~25층	5	436,667,700	336,332,300	773,000,000	38,650,000	38,650,000	115,950,000	115,950,000	115,950,000	115,950,000	115,950,000	231,900,000
			26층~30층	4	438,870,810	338,029,190	776,900,000	38,845,000	38,845,000	116,535,000	116,535,000	116,535,000	116,535,000	116,535,000	233,070,000
			31층~35층	5	441,073,920	339,726,080	780,800,000	39,040,000	39,040,000	117,120,000	117,120,000	117,120,000	117,120,000	117,120,000	234,240,000
			36층~40층	5	443,277,030	341,422,970	784,700,000	39,235,000	39,235,000	117,705,000	117,705,000	117,705,000	117,705,000	117,705,000	235,410,000
			41층~42층	2	452,145,960	348,254,040	800,400,000	40,020,000	40,020,000	120,060,000	120,060,000	120,060,000	120,060,000	120,060,000	240,120,000
			43층 이상	6	456,665,160	351,734,840	808,400,000	40,420,000	40,420,000	121,260,000	121,260,000	121,260,000	121,260,000	121,260,000	242,520,000
		103동 5호	3층	1	395,994,900	305,005,100	701,000,000	35,050,000	35,050,000	105,150,000	105,150,000	105,150,000	105,150,000	105,150,000	210,300,000
			4층	1	404,524,890	311,575,110	716,100,000	35,805,000	35,805,000	107,415,000	107,415,000	107,415,000	107,415,000	107,415,000	214,830,000
			5층	1	413,111,370	318,188,630	731,300,000	36,565,000	36,565,000	109,695,000	109,695,000	109,695,000	109,695,000	109,695,000	219,390,000
			6층~10층	5	415,257,990	319,842,010	735,100,000	36,755,000	36,755,000	110,265,000	110,265,000	110,265,000	110,265,000	110,265,000	220,530,000
			11층~15층	5	419,494,740	323,105,260	742,600,000	37,130,000	37,130,000	111,390,000	111,390,000	111,390,000	111,390,000	111,390,000	222,780,000
			16층~20층	5	428,137,710	329,762,290	757,900,000	37,895,000	37,895,000	113,685,000	113,685,000	113,685,000	113,685,000	113,685,000	227,370,000
			21층~25층	5	430,284,330	331,415,670	761,700,000	38,085,000	38,085,000	114,255,000	114,255,000	114,255,000	114,255,000	114,255,000	228,510,000
			26층~30층	4	432,430,950	333,069,050	765,500,000	38,275,000	38,275,000	114,825,000	114,825,000	114,825,000	114,825,000	114,825,000	229,650,000
			31층~35층	5	434,634,060	334,765,940	769,400,000	38,470,000	38,470,000	115,410,000	115,410,000	115,410,000	115,410,000	115,410,000	230,820,000
			36층~40층	5	436,760,680	336,419,320	773,200,000	38,660,000	38,660,000	115,980,000	115,980,000	115,980,000	115,980,000	115,980,000	231,960,000
			41층 이상	8	445,480,140	343,119,860	788,600,000	39,430,000	39,430,000	118,290,000	118,290,000	118,290,000	118,290,000	118,290,000	236,580,000
			101동 1호	3층	1	400,062,180	308,137,820	708,200,000	35,410,000	35,410,000	106,230,000	106,230,000	106,230,000	106,230,000	106,230,000
		4층		1	408,705,150	314,794,850	723,500,000	36,175,000	36,175,000	108,525,000	108,525,000	108,525,000	108,525,000	108,525,000	217,050,000
		5층		1	417,348,120	321,451,880	738,800,000	36,940,000	36,940,000	110,820,000	110,820,000	110,820,000	110,820,000	110,820,000	221,640,000
		6층~10층		5	419,551,230	323,148,770	742,700,000	37,135,000	37,135,000	111,405,000	111,405,000	111,405,000	111,405,000	111,405,000	222,810,000
		11층~15층		5	423,844,470	326,455,530	750,300,000	37,515,000	37,515,000	112,545,000	112,545,000	112,545,000	112,545,000	112,545,000	225,090,000
		16층~20층		5	426,047,580	328,152,420	754,200,000	37,710,000	37,710,000	113,130,000	113,130,000	113,130,000	113,130,000	113,130,000	226,260,000
		21층~25층		4	428,194,200	329,805,800	758,000,000	37,900,000	37,900,000	113,700,000	113,700,000	113,700,000	113,700,000	113,700,000	227,400,000
		26층~30층		5	430,340,820	331,459,180	761,800,000	38,090,000	38,090,000	114,270,000	114,270,000	114,270,000	114,270,000	114,270,000	228,540,000
		31층~35층		5	432,487,440	333,112,560	765,600,000	38,280,000	38,280,000	114,840,000	114,840,000	114,840,000	114,840,000	114,840,000	229,680,000
		36층~40층		5	434,690,550	334,809,450	769,500,000	38,475,000	38,475,000	115,425,000	115,425,000	115,425,000	115,425,000	115,425,000	230,850,000
		41층 이상		1	443,333,520	341,466,480	784,800,000	39,240,000	39,240,000	117,720,000	117,720,000	117,720,000	117,720,000	117,720,000	235,440,000
		101동 6호		3층	1	408,196,740	314,403,260	722,600,000	36,130,000	36,130,000	108,390,000	108,390,000	108,390,000	108,390,000	108,390,000
			4층	1	417,009,180	321,190,820	738,200,000	36,910,000	36,910,000	110,730,000	110,730,000	110,730,000	110,730,000	110,730,000	221,460,000
			5층	1	425,821,620	327,978,380	753,800,000	37,690,000	37,690,000	113,070,000	113,070,000	113,070,000	113,070,000	113,070,000	226,140,000
6층~10층	5		428,081,220	329,718,780	757,800,000	37,890,000	37,890,000	113,670,000	113,670,000	113,670,000	113,670,000	113,670,000	227,340,000		
11층~15층	5		432,487,440	333,112,560	765,600,000	38,280,000	38,280,000	114,840,000	114,840,000	114,840,000	114,840,000	114,840,000	229,680,000		
16층~20층	5		434,690,550	334,809,450	769,500,000	38,475,000	38,475,000	115,425,000	115,425,000	115,425,000	115,425,000	115,425,000	230,850,000		
21층~25층	4		436,893,660	336,506,340	773,400,000	38,670,000	38,670,000	116,010,000	116,010,000	116,010,000	116,010,000	116,010,000	232,020,000		
26층~30층	5		439,096,770	338,203,230	777,300,000	38,865,000	38,865,000	116,595,000	116,595,000	116,595,000	116,595,000	116,595,000	233,190,000		
31층~35층	5		441,299,880	339,900,120	781,200,000	39,060,000	39,060,000	117,180,000	117,180,000	117,180,000	117,180,000	117,180,000	234,360,000		
36층~40층	5		443,502,990	341,597,010	785,100,000	39,255,000	39,255,000	117,765,000	117,765,000	117,765,000	117,765,000	117,765,000	235,530,000		
41층 이상	1		456,891,120	351,908,860	808,800,000	40,440,000	40,440,000	121,320,000	121,320,000	121,320,000	121,320,000	121,320,000	242,640,000		
102동 1호	3층		1	408,196,740	314,403,260	722,600,000	36,130,000	36,130,000	108,390,000	108,390,000	108,390,000	108,390,000	108,390,000	216,780,000	
	4층	1	417,009,180	321,190,820	738,200,000	36,910,000	36,910,000	110,730,000	110,730,000	110,730,000	110,730,000	110,730,000	221,460,000		
	5층	1	425,821,620	327,978,380	753,800,000	37,690,000	37,690,000	113,070,000	113,070,000	113,070,000	113,070,000	113,070,000	226,140,000		
	6층~10층	5	428,081,220	329,718,780	757,800,000	37,890,000	37,890,000	113,670,000	113,670,000	113,670,000	113,670,000	113,670,000	227,340,000		
	11층~15층	5	432,487,440	333,112,560	765,600,000	38,280,000	38,280,000	114,840,000	114,840,000	114,840,000	114,840,000	114,840,000	229,680,000		
	16층~20층	5	434,690,550	334,809,450	769,500,000	38,475,000	38,475,000	115,425,000	115,425,000	115,425,000	115,425,000	115,425,000	230,850,000		
	21층~25층	4	436,893,660	336,506,340	773,400,000	38,670,000	38,670,000	116,010,000	116,010,000	116,010,000	116,010,000	116,010,000	232,020,000		
	26층~30층	5	439,096,770	338,203,230	777,300,000	38,865,000	38,865,000	116,595,000	116,595,000	116,595,000	116,595,000	116,595,000	233,190,000		
	31층~35층	5	441,299,880	339,900,120	781,200,000	39,060,000	39,060,000	117,180,000	117,180,000	117,180,000	117,180,000	117,180,000	234,360,000		
	36층~40층	5	443,502,990	341,597,010	785,100,000	39,255,000	39,255,000	117,765,000	117,765,000	117,765,000	117,765,000	117,765,000	235,530,000		
	41층 이상	4	452,315												

			5층	1	421,641,360	324,758,640		746,400,000	37,320,000	37,320,000	111,960,000	111,960,000	111,960,000	111,960,000	223,920,000	
			6층-10층	5	423,787,980	326,412,020		750,200,000	37,510,000	37,510,000	112,530,000	112,530,000	112,530,000	112,530,000	225,060,000	
			11층-15층	5	428,194,200	329,805,800		758,000,000	37,900,000	37,900,000	113,700,000	113,700,000	113,700,000	113,700,000	227,400,000	
			16층-20층	5	430,340,820	331,459,180		761,800,000	38,090,000	38,090,000	114,270,000	114,270,000	114,270,000	114,270,000	228,540,000	
			21층-25층	4	432,543,930	333,156,070		765,700,000	38,285,000	38,285,000	114,855,000	114,855,000	114,855,000	114,855,000	229,710,000	
			26층-30층	5	434,747,040	334,852,960		769,600,000	38,480,000	38,480,000	115,440,000	115,440,000	115,440,000	115,440,000	230,880,000	
			31층-35층	5	436,950,150	336,549,850		773,500,000	38,675,000	38,675,000	116,025,000	116,025,000	116,025,000	116,025,000	232,050,000	
			36층-40층	5	439,096,770	338,203,230		777,300,000	38,865,000	38,865,000	116,595,000	116,595,000	116,595,000	116,595,000	233,190,000	
			41층 이상	4	447,852,720	344,947,280		792,800,000	39,640,000	39,640,000	118,920,000	118,920,000	118,920,000	118,920,000	237,840,000	
			3층	1	412,264,020	317,535,980		729,800,000	36,490,000	36,490,000	109,470,000	109,470,000	109,470,000	109,470,000	218,940,000	
			4층	1	421,132,950	324,367,050		745,500,000	37,275,000	37,275,000	111,825,000	111,825,000	111,825,000	111,825,000	223,650,000	
			5층	1	430,058,370	331,241,630		761,300,000	38,065,000	38,065,000	114,195,000	114,195,000	114,195,000	114,195,000	228,390,000	
			6층-10층	5	432,317,970	332,982,030		765,300,000	38,265,000	38,265,000	114,795,000	114,795,000	114,795,000	114,795,000	229,590,000	
			11층-15층	5	436,724,190	336,375,810		773,100,000	38,655,000	38,655,000	115,965,000	115,965,000	115,965,000	115,965,000	231,930,000	
			16층-20층	5	438,983,790	338,116,210		777,100,000	38,855,000	38,855,000	116,565,000	116,565,000	116,565,000	116,565,000	233,130,000	
			21층-25층	5	441,186,900	339,813,100		781,000,000	39,050,000	39,050,000	117,150,000	117,150,000	117,150,000	117,150,000	234,300,000	
			26층-30층	4	443,446,500	341,553,500		785,000,000	39,250,000	39,250,000	117,750,000	117,750,000	117,750,000	117,750,000	235,500,000	
			31층-35층	5	445,649,610	343,250,390		788,900,000	39,445,000	39,445,000	118,335,000	118,335,000	118,335,000	118,335,000	236,670,000	
			36층-40층	5	447,909,210	344,990,790		792,900,000	39,645,000	39,645,000	118,935,000	118,935,000	118,935,000	118,935,000	237,870,000	
			41층 이상	9	456,778,140	351,821,860		808,600,000	40,430,000	40,430,000	121,290,000	121,290,000	121,290,000	121,290,000	242,580,000	
			3층	1	408,196,740	314,403,260		722,600,000	36,130,000	36,130,000	108,390,000	108,390,000	108,390,000	108,390,000	216,780,000	
			4층	1	417,009,180	321,190,820		738,200,000	36,910,000	36,910,000	110,730,000	110,730,000	110,730,000	110,730,000	221,460,000	
			5층	1	425,821,620	327,978,380		753,800,000	37,690,000	37,690,000	113,070,000	113,070,000	113,070,000	113,070,000	226,140,000	
			6층-10층	5	428,081,220	329,718,780		757,800,000	37,890,000	37,890,000	113,670,000	113,670,000	113,670,000	113,670,000	227,340,000	
			11층-15층	5	432,487,440	333,112,560		765,600,000	38,280,000	38,280,000	114,840,000	114,840,000	114,840,000	114,840,000	229,680,000	
			16층-20층	5	434,690,550	334,809,450		769,500,000	38,475,000	38,475,000	115,425,000	115,425,000	115,425,000	115,425,000	230,850,000	
			21층-25층	5	436,893,660	336,506,340		773,400,000	38,670,000	38,670,000	116,010,000	116,010,000	116,010,000	116,010,000	232,020,000	
			26층-30층	4	439,096,770	338,203,230		777,300,000	38,865,000	38,865,000	116,595,000	116,595,000	116,595,000	116,595,000	233,190,000	
			31층-35층	5	441,299,880	339,900,120		781,200,000	39,060,000	39,060,000	117,180,000	117,180,000	117,180,000	117,180,000	234,360,000	
			36층-40층	5	443,502,990	341,597,010		785,100,000	39,255,000	39,255,000	117,765,000	117,765,000	117,765,000	117,765,000	235,530,000	
			41층 이상	9	452,315,430	348,384,570		800,700,000	40,035,000	40,035,000	120,105,000	120,105,000	120,105,000	120,105,000	240,210,000	
			101동 3,5호	41층	2	966,453,140	744,224,419	74,422,441	1,785,100,000	89,255,000	89,255,000	267,765,000	267,765,000	267,765,000	267,765,000	535,530,000
			102동 5호	44층	1	954,975,460	735,385,946	73,538,594	1,763,900,000	88,195,000	88,195,000	264,585,000	264,585,000	264,585,000	264,585,000	529,170,000
			103동 5호	49층	1	952,160,180	733,218,019	73,321,801	1,758,700,000	87,935,000	87,935,000	263,805,000	263,805,000	263,805,000	263,805,000	527,610,000
			102동 3호	44층	1	976,035,920	751,603,709	75,160,371	1,802,800,000	90,140,000	90,140,000	270,420,000	270,420,000	270,420,000	270,420,000	540,840,000
			103동 3호	49층	1	976,035,920	751,603,709	75,160,371	1,802,800,000	90,140,000	90,140,000	270,420,000	270,420,000	270,420,000	270,420,000	540,840,000

※ 상가공급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공급면적(㎡) 또는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84.9888A	084.9827B	084.9639C	164.5903P
견본주택 등의 약식 표기	84A	84B	84C	164P

■ 공통사항

• 상가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가하여 추천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가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가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가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확장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가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가 공급금액에 포함

- 되어 있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판매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아니합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 완납 후 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도금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 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 발급제한 등)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고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라도,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 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금액(주택가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 및 입주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람)
-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나,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 사업 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은 판매시설을 제외한 3층부터이며 최상층은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약식표기)		84A	84B	84C	164P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경기도	4	4	6	14
		인천시	4	4	4	12
		서울시	4	4	4	12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3	2	2	7
		장기복무제대군인	2	3	2	7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2	2	3	7
		중소기업근로자	2	2	3	7
	북한이탈주민	2	2	3	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파주시(1년 이상) 및 경기도(6개월 이상) 거주자(50%)	12	12	13	1	38
	경기도(6개월 미만) 및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50%)	12	12	12	0	36
	신혼부부 특별공급	43	43	46	0	13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7	7	7	1	22
	생애최초 특별공급	46	46	48	0	140
합 계		143	143	153	2	441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그 밖의 광역시</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도 인터넷(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청약접수가 원칙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

- 수가 가능하나 14:00까지 접수해야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셔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 부여 합니다.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대상세대 : 총 7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0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등 제외
-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교육기획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당첨확정자, 예비대상자)는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 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대상세대 : 총 7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08.)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 청약자격요건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파주시 1년이상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경기도 6개월 미만 및 수도권 거주자 거주자(우선 공급에서 낙첨자 포함)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 낙첨자가 기타수도권 물량에서 재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 미적용)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이혼 및 재혼 자녀의 경우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다자녀 특별공급 운영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인천·서울·경기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단,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등본 상 등재)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대상세대 : 총 13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청약자격요건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 12. 08.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 (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내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 순위 상관없이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내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이고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대상세대 : 총 2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내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9% 범위) : 140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내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외로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 12. 08.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10,415,123원	9,908,674원~12,195,290원	10,452,641원~12,864,787원	11,312,132원~13,922,622원	12,171,623원~14,980,458원	13,031,114원~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내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태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내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 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멸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거주 구분
민영주택	1순위	전용 60㎡초과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정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정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정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30%) /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 /

		<p>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p> <p>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p>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50%)
	전용 85㎡ 초과	<p>▪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100%) 적용</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p> <p>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최초 가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자</p> <p>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p> <p>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p>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 외국인 직계존속</p> <p>-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p>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p> <p>-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p>-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p> <p>-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9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자동계산에 의거 별도 확인 필요없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비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내용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점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08.) 현재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20%를 공급(파주시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정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대별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정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 순위 접수 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안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3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우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7의3호 및 [별표1] 제1호 가목2)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6천만 원(비수도권 1억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및 분양권 등)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 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단, 2007.09.0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무모부양, 생애최초	2023.12.18(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견본주택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1, 힐스테이트 더운정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23.12.19(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2순위	2023.12.20(수)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바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바인증서 또는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 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여권정보증명 포함)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여권정보증명 포함)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여권정보증명 포함)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여권정보증명 포함)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12.27.(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 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12.28.(목)~2023.12.31.(일)(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1, 힐스테이트 더 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4.01.08.(월)~2024.01.10.(수)(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1, 힐스테이트 더 운정)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hillstate.co.kr/s/twj)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12.27(수) ~ 2024.01.05(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치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12.27(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 된 자는 향후 연락처 변경 시 당사 건본주택에 유선으로((1522-1157)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체에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력한 연락처로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어 연락처를 잘못 기입한 예비입주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예비입주자 공급 선정(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불참 등]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 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사전 서류제출 안내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일반공급(예비입주자 포함) 계약 시 구비서류)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2항(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예정자로부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전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자격 검토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및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추첨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모든 제반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점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요 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한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서류는 사업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동포,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 등(보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한채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불가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당첨자격 확인 및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용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택취득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	- 공급가액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증빙서류 미제출) - 힐스테이트 더 온정 홈페이지(http://hillstate.co.kr/bw)에 양식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보통은행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군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지족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한 경우
가정제 일반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또는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1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비속 /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같음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지자체청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 배정 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 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18세의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의 날인본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기간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에 비치
	○	건강보험차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금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표기 및 오직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금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반드시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신청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의 날인본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기간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인터넷기소(www.iros.go.kr) > 동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 * 토 지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공동주택/단독주택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가격 열람/단독주택가격 열람 * 기타 건축물 : 위택스-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 조회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의 세대원	- 건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금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소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 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건강보험차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금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표기 및 오직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임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을 입증하는 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소득금액 증명에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증명서류] 참조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가능 *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인터넷기소(www.iros.go.kr) > 동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 * 토 지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후 해당 토지연적을 곱하여 산출 * 공동주택/단독주택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가격 열람/단독주택가격 열람 * 기타 건축물 : 위택스-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의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보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기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우허기건물확인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본인발급용)
	○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보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확인 할 수 있게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업주체에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불인정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감증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납부대상지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또는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 명세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공고일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명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①~⑤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건본주택에 비치) 1)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②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2)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도 전년도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① 접수장소 ② 국제형 홈택스
	기타(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해당 직장 서류는 직인날인 필수이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팩스로 제출된 서류는 소득증빙서류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납부자) 및 납세증명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 세우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우서
------------	--	---	-------------------------------

※ 해당 서류는 직인날인 필수이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팩스로 제출된 서류는 소득증빙서류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여부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의 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①, 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c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Ⅶ 계약체결 안내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을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안내	2024.01.08(월) ~ 2024.01.10(수) 3일간, 10:00 ~ 16:00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1, 힐스테이트 더 운정 견본주택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1차 계약금	하나은행	366-900087-49137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계약자 동호수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관리계좌[계약금(1,2차)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하나은행 366-910009-38104]로 관리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집공고상의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입금됨. 개인별 가상계좌는 세대별로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 1020201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요양.(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p>■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합니다. <p>■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p>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청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청된 호수에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청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청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청자로 관리합니다.
 - (1) 1순위 당청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2) 특별공급 당청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청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청취소 및 고발조치 하며 당청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청자 중 부적격 당청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혹은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 부활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청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명, 단지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등은 지자체 승인 관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청통장 재사용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당청자로 관리하여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 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청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청자로 관리합니다.
- 부동산 거래(분양계약)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체세공과금 등은 납부기한 내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청자의 명단관리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청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청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청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당청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청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수도권: 1년
 -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청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청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체결 전 서류 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아래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청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의 뒀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대출 알선시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시행위탁자와 시공자는 대출금신청을 위한 금융기관에 대출알선의 의무가 없으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이자 대납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입니다.
- 이자후불제 적용 시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가 알선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시행위탁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

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 된 책임을 시행위탁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 합니다. 단, 대출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개인의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시행위탁자가 입주지정기간 이전에 대납했던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입주 시 시행위탁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 입주 시까지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동일적용)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대출 불가 시 시행위탁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 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합니다.
-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대출 전환 시 한도, 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와 무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와 분양상당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당포함)내용을 근거로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특별공급포함)	○		자격검증서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한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 (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정보증명 포함) 등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용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수입인지(인지세)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후 사본 제출 수입인지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주의사항 :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소인 등)시,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리 계약시 추가구비서류		○	상기 서류 외 계약자인감증명서(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도장	계약자 본인발급	본인 외 모두(배우자 포함) 제3조에 간주 / 대리인계약은 가족에 한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무허가건축확인서	해당 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소형허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시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서류	해당 시	전산 검색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서류	해당 시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한국부동산원 발급)
비고	<p>■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강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p> <p>■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거주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p>			

Ⅷ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의 납부방법 및 유의사항

항목	구분	납부시기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10%)	계약시	하나은행	추후 통보 예정	계약자 동호수
	중도금(10%)	2024년 5월 10일			
	잔금(80%)	입주지정일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하나은행 201-910034-35504]로 관리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시행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시공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공급금액 납부 약정일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 계좌와 분양대금 계좌 및 추가 선택품목 계좌는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고 건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 등) 제출[건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잔금은 발코니확장 계약시에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계약서에 납부계좌, 납부금액, 납부일정 별도 안내)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람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상기의 납부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 '1030702홍길동']
- 납부약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습니다.)
- 착오납입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 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84A	84B	84C	164P
발코니 확장 금액	7,261,050	6,866,920	8,261,590	9,916,040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는 별도로서 VAT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선정한 금액이며, 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의 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를 별도계약으로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경로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 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는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이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코니 확장세대는 비확장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발생은 입주자의 관리상의 문제이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시공 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점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시 조영기구,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등의 설치 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자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설치공간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부 온도대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관련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세대가 기본형(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 들뜸, 실사용면적의 감소, 천장크기의 감소, 조명의 상태와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확장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창호, 주방가구 및 확장 시 제공품목 등 구성이 확장 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길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 시와 비확장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영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허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일부)또는 실외기실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드 및 위치)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에는 외부 샷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가구, 확장 부위 마감 연장, 비용이 포함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납부방법 및 유의사항

항목	구분	납부시기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공사비	계약금(10%)	계약시	하나은행	추후 통보 예정	계약자 동호수
	중도금(10%)	2024년 5월 10일			
	잔금(80%)	입주지정일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201-910027-81704 하나은행] 로 관리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은 시행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시공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사비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공급금액 납부 약정일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 계좌와 분양대금 계좌 및 발코니확장 계좌는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고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 등) 제출[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잔금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시에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계약서에 납부계좌, 납부금액, 납부일정 별도 안내)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람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상기의 납부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 '1030702홍길동']
- 납부약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습니다.)
- 착오납입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설치 위치		실내기 개소	주택형별 금액(약식표기)				비고
				84A	84B	84C	164P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전실)	84A,B,C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개소	8,030,000	8,030,000	8,030,000	13,860,000	택1
	164P	거실+2,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서재, 가족실	8개소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부분)	84A,B,C	거실, 주방, 침실1	3개소	4,510,000	4,510,000	4,510,000	6,660,000	
	164P	거실+2, 주방, 침실1	4개소					

시스템에어컨 공기청정형 (전실)	84A,B,C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개소	9,530,000	9,530,000	9,530,000	16,260,000
	164P	거실+2,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서재, 가족실	8개소				
시스템에어컨 공기청정형 (부분)	84A,B,C	거실, 주방, 침실1	3개소	5,410,000	5,410,000	5,410,000	7,800,000
	164P	거실+2, 주방, 침실1	4개소				

2) 추가 선택품목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별 금액(약식표기)				비고				
		84A	84B	84C	164P					
현관	평면선택형	H-위드핏+פותיש				택1				
	현관중문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_수동형)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_자동형)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_수동형) + 현관에어샤워시스템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_자동형) + 현관에어샤워시스템								
주방	평면선택형	주방가구고급화(고급형 주방가구, 세라믹타일 벽/상판 공통) 84A:주방 일체형상판 식탁 84B,84C,163P: 소형가전 소물장 84C : 침실1 히든도어								
	아트월	벽지 → 유럽산 포세린타일(84B, 84C 주방가구고급화 선택 시 선택불가)								
	벽체	도기질 타일 → 엔지니어드 스톤(전타입 주방가구고급화 선택 시 선택불가)								
거실 / 복도	아트월(거실)	국산 포세린 타일 → 유럽산 포세린 타일				164P 택1				
	아트월(복도)	국산 포세린 타일 → 유럽산 포세린 타일(164P 주방가구고급화 선택 시)								
침실1	아트월(복도)	벽지 → 시트판넬 + 가구판넬				택1				
	불박이장	불박이장(슬라이딩)								
침실3	드레스룸	유리 슬라이딩 도어								
	반침장	반침장								
욕실	평면선택형	드레스룸 고급화(고급형 화장대, 벽부형 시스템 도어장+오픈형 시스템가구, 유리도어+조명형 선반 불박이장)								
	욕실1 고급화 (욕조형)	포세린타일(유럽산 벽체, 중국산 바닥)								
	욕실2고급화 (샤워부스형)	포세린타일(유럽산 벽체, 중국산 바닥)								
바닥마감	수전도기 고급화	아메리칸스탠다드				택1				
	전실	강마루 → 광폭 브러쉬마루(전실)	기본형	590,000	610,000		650,000	1,070,000		
			주방가구고급화 선택 시	580,000	600,000		640,000			
	거실/주방/복도	강마루 → 강마루(헤링본패턴)(전실)	기본형	1,310,000	1,370,000		1,450,000	2,380,000		
			주방가구고급화 선택 시	1,300,000	1,350,000		1,420,000			
	침실+거실/주방/복도	강마루 → 광폭브러쉬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주방/복도)	기본형	1,380,000	1,700,000		1,790,000	2,110,000		
			주방가구고급화 선택 시	1,330,000	1,640,000		1,720,000			
	조명	조명특화	기본형	1,500,000	1,800,000		1,900,000	2,340,000		
주방가구고급화 선택 시			1,450,000	1,740,000	1,830,000					
조명	조명특화	조명(거실특화 조명, 거실 실링팬, 픽처레일 일체형 조명, 복도특화 조명, 주방특화 조명, 스피커 식탁등) + 13인치 월패드				9,000,000	9,080,000	9,090,000	9,740,000	

3)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모델명	주택형별 금액(약식표기)				비고
		84A	84B	84C	164P	

3구 인덕션	가스쿡탑 → SK매직 / IHR-B3200		480,000	480,000	480,000	480,000	택1 미선택 시 기본형
3구 하이브리드	가스쿡탑 → SK매직 / ERA-BHI3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가능성 오븐	삼성NQ36A6555CK		320,000	320,000	320,000	32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SK매직 / DWA-9106B		850,000	850,000	850,000	850,000	
냉장고 패키지(냉장/냉동/김치)	LG / 오브제(미스트베이지) + 키큰장	기본형	5,940,000	5,940,000	5,940,000	5,540,000	택 1 주방가구고급화 시 키큰장 (일반→유리장)
		주방가구고급화 선택 시	6,630,000	6,630,000	6,630,000	6,630,000	
	삼성 / 비스포크(코타화이트) + 키큰장	기본형	5,540,000	5,540,000	5,540,000	5,540,000	
		주방가구고급화 선택 시	6,230,000	6,230,000	6,230,000	6,230,000	

④ 유의사항

-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드레인인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및 실외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매립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시공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신장세대는 기본제공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스템 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장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주택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전 평형에 냉매배관 4개소 (가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침실 벽걸이형 기준 3개소)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인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우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특화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스피커 식탁등의 스피커는 1개의 조명에만 적용됩니다.
- 조명특화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픽처레일 일체형 조명은 길이에 따라 분절라인이 적용 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입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1)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적용품목 및 범위(주방가구 및 신발장 설치 위치와 크기는 사업승인관련도면에 준함)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은 기본 선택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문	목재문(문틀, 문짝,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발코니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바닥난방 + 시멘트모르타르(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비닐시트 및 벽패널류 등), 가변형벽체, 발코니, 실외기실, 신발장, 재료분리대(욕실포함)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월패드, 전자식스위치류, 스위치/콘센트류(시공가능한 위치만 설치)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동림(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마감, 발코니천장도장	천장을 위 석고보드 마감, 소방감지기
욕실	천장,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 수전 등), 샤워부스, 욕실액세서리 일체,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트렌치 포함), 욕실환풍기	지정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스위치, 콘센트
주방	주방기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가스쿡탑	소방관련 시설, 배기덕트,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조명기구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 일체	배관, 배선 등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 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2)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원]

구분(주거전용면적)	84A	84B	84C	164P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금액)	38,595,000	39,007,000	39,017,000	74,805,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합니다.

③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 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 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 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체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기본형에서 마이너스 옵션을 반영하여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하신 후 사업주체와 무관한 계약자의 개별적인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시공 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서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 지침 제3조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 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 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향후 계약자가 시공할 경우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를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기 시공되어진 통풍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 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 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동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건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방기구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일반사항

- ※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입주지연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달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세대 비확장 선택시 외벽면 창호가 설치되지 않고, حمام 난간이 설치되어 외부 미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후 개별 확장으로 인하여 추후 창호 색상(유리 및 프레임)이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카달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계약전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교의 학교는 '지산초등학교'에 배치 예정입니다.
- 중학생의 경우 운정1중학교(다울중, 산내중, 산들중, 지산중, 한가람중, 해솔중)에 배치 예정입니다.
- 고등학생은 파주시 관내 기존 고등학교 및 신설 예정고등학교에 배치예정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학교설립을 포함한 학생 배치계획은 변동요인 발생 및 주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수준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입주지연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PL창호(프레임, 유리등, 난간 등)의 제조사, 색상, 사양, 크기,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열림방향, 고정방식, 설치위치, 분할방식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전시품, 유상옵션 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전시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사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조명,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와 소방감지기, 스피커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사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조명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용되며 시행수탁자는 이에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개별인테리어 공사 등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계약자가 계약금, 중도금대출 상환 또는 계약금, 중도금대출 대환처리 및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피난안전구역은 각 동 해당층(1동, 2동 : 23층 / 3동 : 28층)에 설치되며, 향후 상세설계에 따라 피난 안전구역의 그릴위치, 동선, 마감 및 층고, 주변 단위세대 층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대피실에 설치되는 창호는 소방대진입창으로 사용되며, 해당창호는 향후 소방서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창호의 개소수, 적용층수, 형태, 크기, 위치, 높이, 열림방향, 열림방식, 사양,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대피실에 설치되는 소방대진입창호 내부에는 소방대의 활동을 위해 관련법에 맞추어 난간이 탈착되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소방서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난간의 형태, 크기, 위치, 높이, 탈착방식, 사양, 디자인,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하여 소방활동 외에는 난간이 항상 부착되어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각 동별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의 하부층 세대 대피실 창호는 소방대 진입창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피난안전구역 상부층에 있는 세대 대피실 창호는 소방대 진입을 고려하지 않은 창호로 계획되어 창호의 높이 및 탈착식 난간의 설치여부 등 세부계획이 상이하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 및 마감재와 조경 계획, 경관조명,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 오피스텔 / 상업시설의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급배기 환, 태양광 집광판, 냉각탑, 공조기, 소화수조 및 펌프, 기타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시설물 위치 및 형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공동주택 전용 부대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조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건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출입구 주변에 변속차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 후 주출입구 및 변속차로에 대한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재활용집합창고,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실외기 및 환기시설(부대시설,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용), 상업시설 등의 냉각탑, 공조기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위치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시설물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상업시설(근린,판매,문화 및 집회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옥탑, 축벽, 몰딩, 창틀, 필로티, 공용홀, 동출입구, 캐노피, 지하출입구 등) 및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집적소, 조경, 실외기보관소, 냉각탑, 공조실 등)의 형태, 마감재 및 색상은 심의 및 법규,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배치 상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급배기구, 커뮤니티 등, 냉각탑 및 공조기(오피스텔, 상업시설), 쓰레기집적소 등의 인접실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청약신청 및 입주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배기가스 및 불빛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시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차량이 주차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시공사 타 아파트를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수락하고 요청 당사자가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재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결정에 따르며, 모든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건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등 수준의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동의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은 주동의 형태상 일부구간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주동의 복도에 설치된 창호의 크기 및 형태, 사양 등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청자가 계약 체결시 건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건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가 세대 내부 대피실에 설치되며, 본공사시 하향식 피난구의 사양, 크기, 높이, 재질 및 대피실의 바닥 및 벽체 마감, 레벨, 하부 턱 및 배수구 설치여부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 공개공지는 단지 내부이지만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자 임의로 헨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으며, 인허가 협의에 따라 디자인, 범위, 위치, 식재 등 세부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내부이지만 입주인 외에 외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인허가 협의에 따라 디자인, 범위, 위치, 식재 등 세부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썬지공원은 단지 내부이지만 입주인 외에 외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인허가 협의에 따라 개소수, 디자인, 범위, 위치, 식재 등 세부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위치 및 형상은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술작품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건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건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건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아파트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별도의 분양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었으며,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이하 자리 처리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추후 등기를 위해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건립안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점이 발생하는 경우 건본주택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세대 및 기타 설계변경사항이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함을 계약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1층 필로티 및 외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 등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은 공용부에 별도의 세대창고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단지의 커뮤니티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확보에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 하여야 합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상업시설(판매, 근생, 문화 및 집회시설)의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주거시설의 위치와 주동 배치계획 상 각 동별로 지상, 지하 동선거리가 상이하고, 또한 같은 이유로 부득이하게 각 동별로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출까지의 거리가 상이하고, 주차대수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주차장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계약전 해당 동의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의 위치가 이동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용암 구조 검토에 따라 평형별, 세대별, 층수별, 주동별, 라인별, 짐실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사양 등)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분할위치, 손잡이, 시스템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계획상 탑상형과 판상형이 혼합되어 있으며,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등 의 침해,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뢰침(SUS재질)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항공기 소음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은 주상복합 단지용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제57조3항에 따라 공공택지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 따라 본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택지비는 1BL용지의 공급계약 상 주거부분 공급가격을 기준으로하여 산정(주거부분 대지면적 : 41,898.9㎡, 1BL 대지면적 59,855.6㎡)하였으며, 공동주택 대지지분 또한 주거부분에 한하여 배분, 소유권 이전되고 위치를 지정 또는 할양하지 아니하므로 공유지분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며, 1BL전체 대지를 타용도 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부여건

- 사업준공 이전 및 입주 후 인접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일조권, 조망권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주변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대지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상 상위계획 및 최종측량 성과도에 따라 도로폭, 경사도, 레벨 계획, 바닥감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와 단지 주출입구에는 자동차 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시설인 소리천 수변공간은 향후 변경 예정이며, 각종 홍보물(모형, 이미지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향후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세부계획 확정 후 변경 시공될 예정입니다.
- 소리천 변경계획에 의해 단지와 연결보행동선이 변경, 추가되어 생길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소음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시설인 보행자도로는 향후 변경 예정이며, 각종 홍보물(모형, 이미지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향후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세부계획 확정 후 변경 시공될 예정입니다.
- 단지 외부시설인 공중보행데크는 변경 예정이며, 각종 홍보물(모형, 이미지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향후 관련기관 협의에 따라 세부계획 확정 후 변경 시공될 예정입니다.
- 단지 외부시설인 공중보행데크 중 본 단지 서측에 있는 구간은 본 단지 준공후에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어, 공사시 소음, 분진, 진동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부계획 및 공사 일정 등은 관련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와 인접한 F1-M블럭(와동동 1472-1번지)에 지상 39층(변경 가능성 있음) 규모의 신축 건물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건, 조망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책향기로, 외석순환로를 포함한 단지 주변에 도로가 인접함에 따라 소음, 진동, 조망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양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 및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은 오피스텔과 진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계약전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101동~103동 각 1, 6호 라인 북측 지상1층에 썬자공원, 공개공지가 위치하고 있어, 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빛공해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여건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별도 분양시설인 상업시설(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표현한 것으로, 향후 해당시설 계획안 확정 후 형태, 위치, 평면, 면적, 레벨, 층고, 높이, 입면, 재료, 색상, 창호, 개구부(크기, 위치, 형태 등), 설비시설(냉각탑, 공조기, 배기팬 등)의 크기, 위치, 개수 등 전반적인 계획이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별도 분양시설인 상업시설(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표현한 것으로, 향후 공중보행로의 형태, 위치, 평면, 입면, 레벨, 면적, 재료, 색상, 수직동선(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등 전반적인 계획이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별도 분양시설인 상업시설(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변경에 따라 해당시설과 연결된 공동주택(로비, 동출입구, 주민공동시설 등) 시설의 형태, 마감, 동선, 개구부, 창호, 레벨, 위치, 평면, 입면, 재료,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별도 분양시설인 상업시설(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해당시설의 면적변경에 따라 단지 전체의 연면적과 공동주택 세대의 대지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별도 분양시설인 상업시설(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설비시설 및 장식물 등이 추가, 변경되며 이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조망, 일조, 소음, 진동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오피스텔의 옥상 조경 및 휴게시설(포디움상부)이 축소 및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별도 분양시설인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설계변경에 따라 단지 지상부 외부공간의 계획(레벨, 면적, 형태, 동선, 마감, 포장, 색채, 조경, 식재, 장식물, 조형물, 휴게시설물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주변 및 상부에는 각 시설의 실외기실, 냉각탑 및 공조실 등 설비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시설 등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설비시설(냉각탑, 공조기, 배기팬 등)의 위치, 크기, 범위, 개소수 등은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별도 분양시설인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은 향후 변경 예정이며, 각종 홍보물(모형, 이미지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향후 관련시설 계획안 확정 후 변경 시공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별도 분양시설인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연결하는 공중연결 보행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표현된 것이며, 향후 계획안 확정 후 변경 시공될 예정입니다. 진행하며 계획안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조경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공용부위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 및 경관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킹서비스 운영과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 오피스텔 /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판매 및 집회시설)육방 및 축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마감재,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건축(경관)심의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추후 관계 인허가청의 협의과정 등에서 마감재, 색채 및 경관조명이 변경되어 질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광장,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설치 및 단지내 별도의 분양시설인 상업시설(판매, 근생, 문화 및 집회시설)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조명,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 집적소,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집적소 내 자동집하시설을 통해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은 입주인이 관리 운영해야합니다.
- 단지 내 차량정차공간은 비상차량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트랜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랜치폭을 포함하며, 트랜치가 배면, 측면에 시공될시에는 주차라인 마킹 시공 제외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 및 조경(식재, 시설물)에 따라 일조건,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옥상은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및 건축(경관)심의 권고 및 설계개선, 구조검토 등에 따라 본 공사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이점 양지하시어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환 등 각종 설비시설이 노출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출입램프)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에는 지하주차장 출입 및 지상차량 출입램프가 설치되며, 또한 주차 차단기의 위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형주차, 전기차충전면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용도별주차 계획 및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거실 및 침실에 설치된 PVC 분할이중창호는 이삿짐 운반시 사다리차량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분할이중창이 아닌 다른 창호를 이용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

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시공자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옥상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보안을 위하여 출입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시설물, 포장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세대는 단지 내 주차장,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등), 상업시설(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에 의해 생활소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이 인접한 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의 색채 및 외부마감재,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협의(경미한 변경신고)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나, 청약 및 계약 전 이점 양지하시어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 및 소리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하천의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 및 하천 등과의 높이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램프나 계단, 옹벽, 조경석쌓기, 자연시면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용자 하여금 프라이버시,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운동공간 및 단지출입구, 지하주차장출입구, 경비실,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보육시설, 산책로 등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하는 곳의 저층 일부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에 따른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출입구에서 쓰레기집적소까지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된 놀이터, 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은 아파트 법적설치 시설이나 공동사용 여부에 따라 사용검사 완료 후 입주자회의 및 관리조약에 의해 공동 부담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주동은 최상층에 설치된 옥상 구조물 등에 따라 일조 및 조망에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구조물의 공법, 크기, 위치, 모양, 색상, 마감재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나, 이점 양지하시어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5항 및 6항에 의거하여 주차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3m 이상,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1m이상으로 설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주변 및 상부에는 각 시설의 실외기실, 냉각탑 및 공조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등 이 발생 할 수 있으나,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설비시설(실외기실, 냉각탑, 공조기, 주방배기 등)의 위치 및 면적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 함께 계획된 복합시설로서 아파트의 지하주차구획은 타시설과 구분이 되어 있으나, 차량 출입구 및 일부 동선이 혼재될 수 있으나,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아파트 주차구획은 P1B, 지하3~지하5층의 일부구간임)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도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소방서 협의 결과 비상차량 동선 및 정차구간, 에어매트 설치구간 등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에어매트 설치 위치에는 교목 식재는 배제되며, 소방서 점검 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선 상부 가지 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 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설비 및 제습기 가동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주동 지하 및 지상층 로비 출입문은 마감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출입문의 위치, 폭, 형태, 사양, 개소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보관함 및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접근 거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경 구간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각각 설치되고, 각자의 시설만 이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공동사용이 불가함. 이로 인해 오피스텔 주민공동시설의 사용이 제한되니 청약 및 계약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 및 지하주차장 외벽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배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주동간격이 좁아 프라이버시, 일조, 조망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 하, 오수, 도시가스, 전기 등)계획은 인·허가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나, 이점 양지하시어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 정압기가 설치되어, 이와 인접한 세대는 미관, 냄새,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 개소 등 세부계획은 관련기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위치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사업승인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상업시설(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주차장인 지하1층 주차장에 1단지과 2단지의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지하연결통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세부계획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3동 3호 라인 남측 지상1층에 유아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및 부속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인에 의하여 소음, 빛공해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2동 2~3호 남측에 텃밭정원이 위치하고 있어, 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빛공해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1호라인, 102동 6호라인, 103동 6호라인 지상1층에 쓰레기 집적소가 위치하고 있어, 악취 해충발생, 환경권 침해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3동 지상 2층, 102~103동 지하1층에 주민공동시설 일부가 위치하고 있어, 입주인의 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의 발생에 따른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103동 지상 2층, 102~103동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01동, 102동, 103동 입주인이 세대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동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2, 103동 주변 지하1층에 위치한 주민운동시설과 103동 지상2층의 상상도서관 등은 지상1층에서 별도 코어를 통하여 연결되어 일부세대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3동 지상1층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지상1층 어린이승하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차량소음, 전조등 및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2동 1, 6호라인에 관리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어, 입주민의 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의 발생에 따른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남측에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이용객의 시설이용에 따른 소음, 빛공해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지상1~2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빛공해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설계관련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아래 사항 미확인에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및 백연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 제연FAN / 냉각탑 / 공조실 / 실외기 / 우수조 / 탈취기 / 송풍기 / 공조기 / 주방 배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백연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상업시설(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주변 및 지붕에 냉각탑, 공조실, 주방배기구 및 실외기 설치 등으로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백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의 크기, 위치, 사양, 디자인, 개폐여부 및 방식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별도 분양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설비관련시설 등의 위치 및 면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면적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는 중심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 건축물로 건축법상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세대별, 위치별로 일조권 및 조망권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동의 위치, 층, 향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날 수 있고, 일부 세대는 하루 종일 일조가 되지 않는 영구음영 세대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풍통은 발코니, 실외기실 또는 PD내에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 설비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위치 및 수량, 재질, 문양(디자인) 등은 현장 여건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풍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천장들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실시공 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허용오차(제20조 관련)내의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결로현상은 입주자의 관리상의 문제이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시공 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점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 그릴(루버) 창 프레임 및 그릴 등은 금속성 재질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므로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며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실외기실 그릴(루버) 창 프레임 및 그릴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후 세대 내 폴리싱타일 표면의 물기를 즉시 제거해야 하며,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공용부위의 타일 표면에 물기 발생시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 창호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이삿짐 등은 해당동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창호는 층수,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인해 유리의 강도, 두께 및 분할위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바람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견본주택 기준으로 시공되며 경우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 등에 따라 외부 창호는 형태 및 크기 등 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진행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추후 본 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의 판단 기준은 사업승인도면에 따르며 청약 및 계약전 이점 인지하시어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 분할위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후 엘리베이터 출까지 동선이 다소 길어 이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썬크, 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 시 자체특성, 품질, 미관 향상, 마감시공 방식 차이에 따라 견본주택 시공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은 바닥난방이 설치됩니다.(양변기/세면기 하부, 샤워부스 내부 및 욕조 하부 제외)
- 욕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아파트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 라인별, 침실별로 창호 사양(창틀, 소프트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시공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오피스텔 주동 옥상에는 소화펌프실 및 소화수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인접한 일부 호실은 소음, 진동, 일조, 조망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주동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건축물의 옥상에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이 설치되며, 실시설계시 위치, 크기, 높이, 재질, 구조,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아파트 101동, 아파트 102동, 아파트 103동 옥상에 설치 될 예정이며, 본공사시 효율 개선 등의 사유로 설치위치, 수량, 크기, 각도, 높이, 사양 등 세부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과 저층부 포디움(부대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상부가 만나는 부분은 본 공사시 구조,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레벨, 마감, 디테일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가스배관 및 계량기가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위치는 타입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세대 내부에 세대분전함 및 세대단자함이 개별(또는 통합)으로 설치되며, 위치 및 형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5항 및 6항에 의거하여 주차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3m 이상,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1m이상으로 설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차량진출입구 이용 시 경사로로 연결되어 P1BL의 지하3층부터 지하5층까지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시설 주차구역인 지하1,2층은 이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3층 지하주차장 차량통행로의 유효높이는 2.3m 이상 확보되어 있으며, 동출입구의 택배보관소에 연결되는 일부 차로는 유효높이 2.7m 확보되어 있어 일반적인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 지하4층~지하5층 지하주차장 차량통행로의 유효높이는 2.3m 확보되어 있습니다.
- 101동 1, 2층 D/A 시설물 설치로 인한 급배기 소음, 매연 및 환경권 침해 등에 의한 생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2동 1, 2층 D/A 시설물 설치로 인한 급배기 소음, 매연 및 환경권 침해 등에 의한 생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3동 1, 2층 D/A 시설물 설치로 인한 급배기 소음, 매연 및 환경권 침해 등에 의한 생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103동 4~6호 라인 서측 아파트/오피스텔 차량 진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발생, 매연, 분진 및 빛공해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2동 1~3호 라인 동측 아파트/오피스텔 차량 진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발생, 매연, 분진 및 빛공해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 층에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영역을 분리해 사용하게 되므로 오피스텔 104동과 인접한 103동은 주차장 이용에 상대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전기관련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 1.옥상층: 1동,3동,4동,7동,9동,11동,12동
 - ※ 중계장치 설치 위치
 - 1.옥상층: 1동,3동,4동,7동,9동,11동,12동
 - 2.지하3층
 - 1BL: 팬룸(4개소), 2BL: 팬룸(3개소)
 - 3.지하1층
 - 1BL: 팬룸(4개소), 2BL: 팬룸(3개소)
 - 4.지상2층
 - 1BL: EPS/TPS(3개소), 2BL: EPS/TPS(3개소)
 - 5.공동주택
 - 1동: 지상8층,지상22층,지상35층
 - 2동: 지상8층,지상22층,지상37층
 - 3동: 지상9층,지상25층,지상41층
 - 6.업무시설
 - 4~13동: 지상9층,지상25층,지상41층
- 일부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태양광 집광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

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하이오티(Hi-oT)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침실 내 세대분전함 및 세대단자함 또는 세대통합분전함이 설치되며, 시공과정에서 위치 및 마감이 변경 될 수 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 는 세대 당 2개가 지급 됩니다.
- 스마트폰 키 및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주방기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스마트 주방거치대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스마트 주방거치대 후면 높이에 설치 되며, 후면에 주방거치대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사업승인허가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 될 예정이며(지하 3~4층),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투홍 서비스는 현대/기아차 19년이후 생산 모델 중 카투홍, 홍투카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해당차량의 커넥티드서비스(블루링크, UVO,제네시스)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서비스는 제조사의 운영 및 요금정책에 따라 기능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램프 진출입로에 설치되는 출차경광등은 최소 50dB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추가선택옵션 등에 따라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특허권 등 부득이한 경우 및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계약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다용도실 / 발코니 상부 / 실외기실은 슬라브 하부에 전열교환 환기장비가 설치되며, 장비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느껴질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면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코너선반, 수건선반 등), 욕실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라믹타일, 엔지니어드스톤, 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단자함, 세대분전함,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실시공사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이 협소하거나 안목치수가 도면 및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주방 상부장 하부의 간접조명은 가스배관, 가스차단기등의 설치 등으로 분절,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발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히는 가전의 크기에 따라 주방쪽공간 가전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김치냉장고가 코너부에 설치되는 경우 가전의 크기 및 구성에 따라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실내에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유사옵션품목(가구, 가전, 조명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확장형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장, 침실 반침장, 안방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체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을 집니다.
- 견본주택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팬던트는 전시용으로 실시공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벽, 바닥 타일의 줄눈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줄눈 및 타일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유, 무상옵션 항목 및 확장공사 포함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됩니다.
- 단위세대의 내부 단차부위(발코니, 욕실, 현관)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설비 배관상의 이유로 커튼박스 크기는 타입별, 침실별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각 선택형 평면(유,무상)에 따라 가구, 도어 구성 및 크기 등이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시 타일, 천연석, 엔지니어드스톤(거실 벽, 주방 벽,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패턴 및 결(베인)은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시공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중문 등 유리 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는 유리 벽체 및 도어, 프레임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INT확인필요:옵션여부 등)
- 본 공사시 현관 중문 설치 시 현관 가구 사이즈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현관문 및 대피실문, 그릴의 도장, 색상 및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에 표기된 유/무상 여부의 기준은 기본확장형 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철재방화문(현관문 등)은 방화성능을 고려하여 본 공사시 하부실, 상하좌우 프레임 형상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내 설비배관 등에 의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시스템가구 적용 부위 및 내부 구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가 실외기실, 발코니 등 천장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 정도에 따라 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필터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분입니다.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본공사시 사양 및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도어 등)의 각종 디테일(프레임, 레일,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붙박이가구의 후면 및 바닥, 벽체 등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본공사 시 타일(욕실 바닥 및 벽체, 현관 바닥, 아트월 등) 및 세라믹타일(주방 상판/벽체(유상옵션))의 패턴 및 결(베인)은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시공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싱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 본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분할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가구 간섭부분 (유상옵션 평면선택제 포함)에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픽처레일의 위치, 수량, 길이 및 사양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평형/타입 별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타입별 주방내부 구성 및 하드웨어, 악세서리 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면선택제 유상옵션 선택 시 실내창호로써 기밀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상대피동선으로 견본주택 창호의 유리를 일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본공사 시 유리가 설치됩니다.)
- 커튼박스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목창호(일부 실 제외)에 손개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넘침 방지가 목적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 바닥 타일의 줄눈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줄눈 및 타일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의 전원 연결을 위해 가구 내 전선 인출구가 타공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타입별 가구 구성 및 하드웨어, 악세서리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및 무상옵션 평면선택제에 따라 커튼박스의 길이 및 천장물딩, 가구 및 시스템가구 등 디테일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바닥,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 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나 바닥에는 페인트로 마감됩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대청형으로 계획되어 침실, 거실, 주방 등의 향, 조망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계약전 해당세대의 향, 조망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비내력 벽체는 ALC블록 벽체, 경량벽체,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형과 비확장형 인접 세대간 경계벽에 단열을 위한 단열재 및 조적벽체가 설치되어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론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대피실 바닥 및 벽체의 마감의 색상, 마감사양, 광택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실외기실 그릴창의 제조사, 재질, 사양, 크기, 디자인, 색상, 열림방향, 고정방식, 설치위치, 하부씰 디테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다용도실의 출입문 사양이 주택형별로 서로 상이하여, 세탁기 가동시 소음, 진동 등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반드시 청약 및 계약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비확장세대는 발코니에 소방배관 및 환기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164P타입의 경우 별도의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테라스에 설치 예정이니, 이에 대해 반드시 청약 및 계약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살균청정환기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시, 전열교환기, 천정형 공기청정기 내부에는 광플라즈마 램프가 설치되며 램프는 연 1회 교체를 권장합니다.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램프의 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분입니다.
- 아일랜드 식탁의 상부에 인덕션 및 독립형 후드가 설치되는 세대의 경우 가스 쿡탑 사용이 제한됩니다. 추후 가스 쿡탑 이용 시, 가구 수정공사가 필요하며 이는 입주자 분임을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는 펌 샤워수전은 배수구에 반려동물의 털 등의 이물질에 의한 배관 막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헤어캐처 배수구가 설치됩니다. 배수 성능을 위하여 배수구의 유지보수가 필수적으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욕실천정내부 벽체, 다용도실 벽체, 실외기실 벽체에 PD내부 점검을 위한 내시경정검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점에 따라 옵션 계약 시점 등이 세대 내부 공사 기간 이후 진행 될 경우, 부득이하게 옵션을 선택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이 발생할 수 있다.
- 단위세대 내 마감 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견본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 세대 내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세대통합분전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설치방향, 개소, 디자인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시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함 차단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법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전열기구(콘센트, 스위치 등)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시 주방 가구, 쿡탑, 개수대, 악세서리 등 설치 위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마트 거치대가 설치 될 경우 후면에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주방 타일면에 노출 설치되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 됩니다.
- 주방 스마트 거치대 혹은 주방TV의 전원은 해당기기 후면에 설치된 콘센트를 사용합니다.
- 주방 스마트 거치대는 주방 가구 유상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가구장 매립 조명과 간섭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설치형태가 변경 될 수 있으니 계약전 명확히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가스배관, 가구장, 악세서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옵션 선택 유/무 및 사용성 개선에 따라 온도조절기 및 조명스위치는 통합형 또는 분리형으로 적용 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확장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규격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거실의 아트월 설치, 복도, 침실, 주방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인화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점 양지하시어 계약 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계약자 선택사항에 따라 세대 내부의 마감재 및 가구에 대한 마감치수(두께, 폭, 높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설계도면에 미표기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 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불가하오니, 계약전 반드시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항의 경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구분	내용
시설명	피트니스, 골프, 사우나, 힐스라운지(주민카페), H 아이숲(실내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스튜디오, 어린이집, 경로당, 생활지원센터 등
지분구조	아파트 100%
사용방식	아파트 입주민 사용

- 분양시 홍보물,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곱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분양안내책자(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커뮤니티시설(주민운동시설 등) 내부에 표현된 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기기 및 비품 등)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주민부대복리시설에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품목만 시공하므로 기타 시설,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 및 운영, 유지,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실제 시공될 시스템 등 설치품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비교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을 제공하며, 지층의 특성상 전자기기, 목재류 등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습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설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동하부 위치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입주후 각 입주자대표회의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상업시설(근린생활,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기타유의사항

-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이점 확인하시어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X

기타 계약자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당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방문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방문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진행절차 ① 사전방문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도착 → ③ 접수, 교육안내 → ④ 입주자방문 및 확인사항 작성 → ⑤ 방문표 제출 → ⑥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방문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입주예정일 : 2025년 08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기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납한 중도금 및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 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시행으로 일일 공사기간 단축 시 단축기간 만큼 공기연장이 될 수 있고 입주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본 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입주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분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감리금액
건축	주이가중합건축사사무소	211-86-61197	20,946,323,137원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17-81-08600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20-81-97884	
전기	주천도엔지니어링	220-87-14356	2,171,763,400원
소방·통신	에이앤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415-87-00178	3,575,000,000원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주택은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하울디앤씨(이하 “위탁자”라 함),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이하 “수탁자”라 함) 및 시공사 현대건설(이하 “시공사”라 함),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하울디앤씨(주)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2.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하울디앤씨(주)와 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반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하울디앤씨(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하울디앤씨(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3.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하울디앤씨(주)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주)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4.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를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구분	공시항목	금액(천원)	구분	공시항목	금액(천원)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214,522,368	공사비	건축	유리공사	1,417,555	
	기간이자	40,425,499			타일공사	5,580,771	
	그 밖의 비용	17,505,599			돌공사	3,716,357	
	필요적 경비	11,182,062			도장공사	1,614,994	
소계	283,635,528	도배공사			1,920,533		
공사비	토목	토공사			3,411,694	수장공사	3,130,220
		흙막이공사			-	주방용구공사	4,514,501
		비탈면보호공사			-	잡공사	5,187,935
		옹벽공사			-	급수설비공사	6,192,986
		석축공사		-	급탕설비공사	5,883,337	
		우.오수공사		341,110	오배수설비	2,477,194	
		공동구공사		-	위생기구공사	4,025,441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공조설비	-	
		도로포장공사		366,032	난방설비공사	2,477,194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가스설비공사	619,298	
		정화조시설공사		-	자동제어 설비공사	928,947	
		조경공사		1,704,802	특수설비공사	1,238,597	
		부대시설공사		-	전기설비공사	10,321,301	
	건축	공동가설공사		2,589,914	그 밖의 공중	정보통신공사	5,351,785
		가시시설물공사	2,548,136	소방설비공사		7,982,043	
		지정 및 기초공사	3,255,086	승강기공사		2,580,325	
		철골공사	-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5,671,406	
		철근콘크리트공사	47,308,575		이윤	4,066,291	
		융접공사	-	소계	195,843,231		
		조적공사	2,805,974	간접비	간접비	설계비	3,713,447
		미장공사	9,228,538			감리비	4,585,872
		단열공사	1,558,874			일반분양시설경비	33,143,156
		방수, 방습공사	3,142,695			분담금 및 부담금	8,771,783
		목공사	5,431,119			보상비	-
		가구공사	15,700,986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11,747,263
		금속공사	1,084,976			소계	61,961,521
		지붕 및 환통공사	1,103,683	그 밖의 비용	그 밖의 비용(제14조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더해지는 비용)	33,642,820	
창호공사	7,362,026	사업비 총액	575,083,100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목		심사결과금액	산출근거	
택지비 가산항목	법정 택지이자	40,425,499,530	인정	
	제세공과금	11,182,062,532	인정	
	양석지반공사비	2,951,299,604	조정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6,855,022,296	조정	
	특수공법 공사비	6,703,551,510	조정	
	지역난방부담금	995,725,639	인정	
	합 계 (택지비 가산항목)	69,113,161,111		
건축비 가산항목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	3,087,786,655	인정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2,742,188,742	인정	
	인텔리전트 설비	홈네트워크	6,234,010,860	조정
		에어컨냉매배관	4,281,471,810	조정
		기계환기설비	4,331,109,340	조정
		쓰레기이송설비	1,823,904,114	조정
	공동주택성능등급	5,804,275,856	인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3,026,843,458	인정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534,245,890	조정	
	법령개정에 따른 가산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60,909,237	조정
	사업승인조건	외관특화공사비	942,241,000	조정
	분양보증수수료		773,869,172	조정
	합 계 (건축비 가산항목)	33,642,856,134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명칭 : 힐스테이트 더 윤정(아파트) 분양보증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사천이십오억오천팔백일십칠만원정 (₩ 402,558,170,000)	제 01292023-101-0006700호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내용확인**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가 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종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종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흡수도,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 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③ 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제5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2. 분양계약서
3. 입주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4.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5. 계약금 및 중도금 출금내역 등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 ① 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방법(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선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시공사·공동사업주체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주채무자 등(이하 "시공사 등"이라 함)이 계속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공사 등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사가 결정할 때까지 그 최고를 유보할 수 있으며, 시공자등이 주택분양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2. 보증사고일 현재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합니다.
- ② 제1항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최고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선택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그 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 ③ 공사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3분의 2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한함)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발급된 하나 이상의 보증은 하나의 보증으로 보아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상관없이 문화재 발견·토지멸실 등의 사유로 정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합니다.
- ⑤ 공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 ⑥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분양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공사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며, 보증채권자가 제5조 및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협력의무를 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제2조 제1항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⑧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사가 선정하는 자가 해당 공사를 승계시공합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제2조 제2항의 잔여임주금 등을 공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⑨ 분양이행의 경우 공사는 원래의 입주예정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새로 입주금의 납부기일과 입주예정일 및 잔여임주금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지체 없이 보증채권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보증사고가 원래의 입주예정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보증사고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지정하여 알립니다.
 1. 제5항의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시까지의 기간
 2. 실행공정률을 예정공정률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상의 필요한 공정기간
- ⑩ 공사는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협의당사자로 합니다.

【계속사업】 보증사고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또는 공동사업주체가 공사를 마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주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7조 (분양이행시 지체배상금 및 연체료의 적용)

- ① 공사는 제6조 제9항에 따라 알린 입주예정일에 입주(임시사용승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기납부된 입주금의 그 초과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지체배상금률(지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지체배상금률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를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체배상금을 부담합니다.<개정 2019. 7.25.>
- ② 분양이행시 보증채권자가 납부해야 할 잔여임주금에 대한 연체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난 입주금 : 납부지연일수에서 임주지연기간(원래의 입주예정일로부터 분양이행시 새로 알린 입주예정일까지의 일수)을 뺀 기간에 원래 주택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나지 않은 입주금 : 제6조 제9항에서 공사가 알린 입주금납부기일에 입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연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연체료율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를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개정 2019. 7.25>

제8조 (대위 및 구상)

- ①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③ 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공사가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9조 (보증채무의 성립)

공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때(상가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함)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제10조 (보증의 실효)

보증서 발급 이후에 보증서에 적힌 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보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공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업주체의 변경
2.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변경

제11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로 합니다.

제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의 해석)

- ① 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공사는 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보호)

- ① 공사는 이 보증의 유지, 관리, 보증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단서개정 2019. 7.25.>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신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개정 2019. 7.25.>
- ② 공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개정 2019. 7.25.>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기타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66-9009).

XI 사업관계자 현황

구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분양대행사	
상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하을디앤씨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앤디플래닝	주식회사 니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73, 3층 302-9호(삼성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제비동 314호,315호 (운정동, 송파 테라타워 2)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69-65, 501호(동패동)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10111-4520311	110111-0007909	110111-6266111	284911-0128924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1, 힐스테이트 더 운정 견본주택

■ 분양홈페이지 : <https://hillstate.co.kr/s/twj>

■ 분양문의 : ☎ 1522-1157

■ 견본주택 위치도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마감재 목록표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